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Library through Elevating the Status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김 성수(Sung-Soo Kim)*
서 혜란(Hye-Ran Suh)**

◇ 목 차 ◇

1 서 론	4 신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입지조건 및 환경·주변조건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4.1 신축 보존서고의 입지조건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4.2 신축 보존서고의 환경을 고려한 주변조건 및 입지의 선정
2 대통령기록관	5 결 론
2.1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	
2.2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2.3 대통령기록관의 형태 및 면적	
3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참고문헌〉

〈국문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설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문제와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에 대한 문제를 연구한 것이다.

첫째,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이관되는 기록물의 수량이 해마다 급증하여 지금의 서고(書庫)로는 3년 이내에 한계상황에 도달한다. 따라서 신축 보존서고의 설계와 건축이 시급(時急)한 실정이다. 게다가,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公的)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重要)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인 관점, 역대 대통령들의 관련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보존·정보제공·연구·박물관·교육·관광 기능 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해당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물도 함께 수집되어, 이들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展示)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展示館)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並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하여, 신축되는 대통령기록관의 시설 및 면적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muyokss@hanmail.net)

**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rsuh@mail.silla.ac.kr)

은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모든 국가기록물을 올바르게 통제(統制)·조정(調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이 관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기록물을 총괄하고 있는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 즉 <국립기록관리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제고(提高)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보존서고)의 입지조건과 환경조건 및 입지의 선정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요약 : 대통령기록관, 정부기록보존소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urgent issues of establishing the presidential library in relation to the current standing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As government records have been tremendously accumulated every year,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will be full within three years, which indicates that the constructing of new storage repositories is an emergent issue. In addition, presidential records ar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d influential public properties for preserving historical value and interpretation at the national level. Some serious concerns relating to the presidential library are raised for consideration.

First of all, it is compulsory to preserve presidential records and to construct the presidential library.

Second, the presidential library performs a variety of functions including the acquisition, preservation, access, reference, research, education, and display of presidential records as well as exhibits of public activities and administration personally and in public during the president's regime. A new presidential library should function as both of a depository and museum of presidential records through systematic arrangement and display. Thus a new repository of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should be co-constructed with the presidential library within the same boundary.

Third, a newly constructed presidential library should be at least double- or triple- sized more than estimated in order to contain all related holdings.

Fourth, to take custody of public records across the legislature, judiciary and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should be directed by an official at the level of vice-minister and upgraded to an independent office such a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Fifth, the presidential library's location and surrounding environments should be selected with careful planning.

Keywords : Presidential archives and Records service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근래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은, 한 국가 또는 한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다. 올바른 역사의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기술과 교육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다시 정확한 역사기록을 작성·평가·수집·정리·보존·이용하는 시스템의 확립에 바탕을 둔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¹⁾(이하 「기록물관리법」으로 약칭함)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뿐만 아니라 후대에 기록유산을 전승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촉진하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물관리법」 제5조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부기록보존소는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을 결정하는 정책기관임과 동시에 국가기록물의 수집·보존 및 이용을 책임지는 기록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²⁾국제아카이브스연맹(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이 1996년 채택한 윤리강령 제1조에서는, "아카이스트는 보존기록물의 원형성(integrety)을 보호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증거물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6)"고 규정함으로써 기록물의 보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부기록보존소의 보존기능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되는 기록물의 수량이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1) 이 법령의 제정은, 우리나라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시행령의 부분적 연기로 인하여 제도적 정착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2) 현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 하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는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소장을 필두로 대전본소(행정과·수집과·보존과), 부산지소(서무과·보존과) 및 서울사무소로 조직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국가기록물의 보존을 직접 담당하는 보존서고는 대전과 부산에 각각 소재하고 있다. 1997년에 설치된 대전서고는 대전 정부종합청사 지하2층에 위치하며 문서·행정박물·정부간행물·마이크로필름·각종 시청각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부산서고는 1984년에 완공된 독립건물로서 일반문서·도면·마이크로필름·비밀문서 등을 보존하고 있다.

반면에 보존서고의 수용 능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³⁾ 계다가 최근 이관되는 기록물이 매년 10~12만 권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향후 3년 이내에 한계상황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⁴⁾

둘째, 기존 서고의 노후화 또는 부적합성이 드러나고 있다.⁵⁾

셋째, 종전까지 종이가 주종을 이루던 기록매체가 사진·필름·녹음테이프·마이크로필름 같은 시청각자료 및 전자자료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매체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보존환경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⁶⁾

넷째, 역대 대통령 관련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제2공화국의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줄곧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해 온 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기록관리를 소홀히 한 탓으로 대통령 관련기록물의 대부분이 산실(散失)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⁷⁾ 「기록물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수 있는 정부기록보존소로서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2001년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신규 기록물보존서고 확보·추진을 계획하였던 것

3) 대전과 부산의 보존시설은 면적이 3,628평이고 서가의 총길이가 68.07km에 이르지만 이미 71%(일반문서는 90%)의 절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4) 미국의 경우, 1935년에 완공된 National Archives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93년에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일명 Archives II)라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한 사례가 있다(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97).

5) 부산서고는 폭 100cm에 이르는 이중방폭벽 설비를 갖추는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한 전문시설로 설계·건축되었지만, 준공 후 20년의 세월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바닥균열 등 노후화 현상이 나타나 현재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서고는 설계변경과정을 거쳐 정부종합청사 지하층을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부에 수도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등 자료보존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록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온도와 상대습도가 밤낮이나 계절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통제하기 어려운 지하공간을 피하는 것이 자료보존의 기본이다(Utah State Archives & Records Services, 2000). 지난 4월 21일 미국의 NASA Goddard Space Flight Center 지하실에 위치한 기록보존관 천장을 지나던 수도파 이프 누수로 1950년대 이후 수집·보존해오던 역사적 가치를 가진 사진 등 이미지 기록 수천 건이 손상된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Sawyer, 2001).

6) 보존서고의 최적온도와 상대습도는 보관하는 자료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종이에 인쇄된 문서나 지도는 일반적으로 온도 $21^{\circ}\text{C} \pm 1^{\circ}$, 상대습도 $45\% \pm 5\%$ 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지만 철러 영화필름 보존의 최적 조건은 온도 $-4^{\circ}\text{C} \pm 1^{\circ}$, 상대습도 $30\% \pm 3\%$ 로 알려져 있다(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97).

7) 「기록물관리법」 제정과 함께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대통령기록관〉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비록 만시지탄(晚時之歎)의 감이 있으나 다행한 일이다.

은 이런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정부기록보존소 1999), 신축서고의 설립 때에는 필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건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 당위성 또한 마땅하다.

정부기록보존소가 명실상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기록물의 보존기능에 대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⁸⁾ 지금 요구되는 사항은 '정부기록물 보존을 위한 종합계획'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보존서고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장·단기계획의 틀 안에서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해 나가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표는,

첫째, 정부기록물 보존서고 신축에 관한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와 병존(並存)하여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 및 그 기능,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현재 상태의 정부기록보존소의 조직 및 기능으로서는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입법·사법·행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총괄하여 관리·통제하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일 수밖에 없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위와 같은 첫째 사항의 기능을 완수하고, 정부기록보존소가 위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o)} 제고(提高)되어야 할 절실한 상황에 처하여 있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고, 동시에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국가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수집·관리·보존하며, 이를 모든 기록물을 통제·조정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의 수장(首長)이 통괄하여야 비로소 그 기능을 세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최소한 '국립기록관리청'이라는 청(廳) 단위 이상으로 승격되어야 마땅하다.

셋째, 정부기록보존소가 승격된 청 단위 이상의 기관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이 기관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할 때의 입지(立地)조건 및 환경·주변조건 등을 면밀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향후 정부기록보존소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과 세부 계획 및 그 실천지침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록물의

8) 정부기록보존소는 전문기록관리기관의 기본 책무(責務)을 완수하기 위하여, ①책임행정과 정부정책 투명성의 실현을 위한 기록물의 생산과 관리 정책제도 확립과 제도 운영감독, ②영구보존 증빙 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의 항구적인 보존, ③보존 영구문서의 정리, 목록 작성과 열람 활용, 정보 제공의 기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보존과 후세 전승을 보장하고, 21세기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기록정보의 영구보존과 합리적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즉, 정부기록보존소 보존서고 신축의 타당성 입증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1) 대통령기록관

- (1-1)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
- (1-2)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 (1-3) 대통령기록관의 형태 및 면적
- (2)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
- (3) 신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입지조건 및 환경·주변조건 등

그리하여 본 고에서는 정부기록보존소가 향후 '청(廳)' 단위 이상(以上)의 기관인 이른바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승격됨과 동시에, 이 기관에 '대통령기록관'이 병존(並存)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그 일조(一助)를 기하고자 한다.

2. 대통령기록관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급하게 정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에 대하여, 1)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 2)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3) 대통령기록관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2.1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

- 1)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가통치의 보장

올바른 역사의식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기술과 교육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다시 정확한 역사적 기록물정보(記錄物情報)를 작성·평가·수집·정리·보존·이용하는 시스템의 확립에 바탕을 둔다.

이 명제의 타당성은, 미국이 강력한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을 갖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루우즈벨트(Franklin Roosevelt) 대통령이 1941년 6월 30일 자신의 대통령기록관 개관식에서 행한 연설에 명확하게 나타난다.

국가(國家)가 과거의 기록물을 수집해서 미래의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신봉해야 한다. 1) 과거를 믿어야 한다. 2) 미래를 믿어야 한다. 3)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교훈으로부터 자신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판단력을 얻을 수 있는 국민들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특히 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公的)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수집·정리하고 후대에 남기는 국가에서만 그 국가의 미래를 창조할 국민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 선진국들의 사례에 입각하면,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여 국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국가적 기록정보는 물론이고 대통령과 그 가족, 또는 주요 참모들의 사적(私的) 기록까지도 수집하고 보존하는 외국의 사례들은 바로 이런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보존하며 공개하는 기록관리시스템은 통치자의 행동과 정책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이며, 동시에 민주적이고 투명한 통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2) 대통령기록물 관리·보존의 취약성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50년 동안(제2공화국의 짧은 시기는 제외) 줄곧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해 온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록보존소가 2000년 11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은 단지 54,891건에 불과하다.

대통령기록물의 사료(史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록불이 생산조차 되지 않거나, 기록물이 생산되었더라도 그것을 마치 사유물인양 해당 대통령의 퇴임과 함께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계속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수량적 공백은 거의 치명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현재 정부기록보존소가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 중 대부분이 '법령공포원본', '임용 및 서훈문서', '각급 행정기관의 보고문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행사기록물'에 불과하여, 해당 대통령 재임시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움이 많다'는 질적(質的)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곽전홍 2000, 63 참조).

특히, 우리나라는 유네스코(UNESCO)의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登載)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그 등재가 최근에 확정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고 완벽한 통치기록(統治記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20세기 중반부터의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보존과 이용은 물론이고 그 수집조차 제대로 되어있지 못하다는 현실은 일견 쉽게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현황에 직면하여 있다.⁹⁾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기록불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5709호, 1999.1.29)의 제정과 함께 이제까지 방치되어 있던 공공기록물관리시스템을 확립해 나가는 시점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설치는 실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는 미국에서도 '과거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이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역대 대통령과 그 유족들이 임기가 끝나면 대통령기록물을 임의로 처리했고, 그 결과 미국의회도서관 등 여타의 도서관·역사학회·사립기록관 등에 흩어져 보관되고 있기도 하며, 분실되거나 의도적으로 파기된 기록자료들도 상당히 많다(NARA 홈페이지 참조)'는 사실은 우리에게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3) 법률적 근거의 확보

현재 보존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보잘것없게 된 이유 중 상당부분은 법률적 기반이 허약한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1987년이다. 그 해에 개정된 「정

9) 1910년부터 35년 간 일제의 강점기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계속된 정치적 혼란과 전쟁,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의 독재정치 등 어두운 역사의 그늘 속에서 대통령기록을 비롯한 공공기록시스템은 확립되기 어려웠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제12222호, 1987.8.1)에 제39조 제1항이 신설됨으로써, 대통령기록물을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할 법적 근거를 비로소 갖게 된 것이다.¹⁰⁾

제39조(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문서(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를 포함한다)는 ...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1991년 「정부공문서규정」을 대체해서 새로 제정된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 1991.6.19) 제34조 제1항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사무관리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기록물에는, 대통령비서실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비밀록 등 비공식 기록물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문서들은 상당 부분 수집과 보존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적 조치는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크게 강화되었다. 동 법 중 대통령기록물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8조(대통령기록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소속 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록물관리). ①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기록물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이를 수집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훼손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공공기관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한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원활한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매년 대통령기록물의 목록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임기종료 6월 전부터 임기종료까지의 기간 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보존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그에 앞서 1949년 「정부처무규정」(대통령훈령 제1호, 1949.7.15)과, 1963년 전면 개정된 「정부공문서규정」(각령 제1645호, 1963.11.20)에서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규정이 있진 하지만, 문서수발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규정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설치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제8조)에 의하면 의무조항이 아니며, 다만 '필요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는 하지만 「기록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에 필요한 법률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중앙기록물관리 기관 즉 정부기록보존소가 대통령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책임을 갖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 법 제13조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¹¹⁾ 대통령기록물의 무단 폐기와 훼손·반출을 금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질적으로 중요한 대통령기록물을 수집·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4) 국민적 합의

대통령기록관 설립 논의의 공론화는 박정희대통령기념관 설립추진에서 비롯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박정희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역사학자 모임'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와 학술단체 등이 기념관 건립의 대안으로서 모든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수집·정리·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한곳에 모아 보존하고, 차제에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료들을 수집하여 보존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대통령기록관의 설립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1) 대통령기록물의 범위는 동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6609호, 1999.12.7) 제28조 제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28조(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보존관리) ①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통령이 결재하거나 보고 받은 기록물.
- 2) 대통령과 그 보좌기관이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
- 3) 공공기관이 대통령 또는 그 보좌기관에 제출한 기록물의 원본.
- 4) 대통령 또는 차관급 이상의 대통령의 보좌기관이 참석하는 정책조정을 위한 각종 회의의 회의록.
- 5)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한 메모, 일정표, 방문객명단 및 대화록, 연설문 원본 등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
- 6) 대통령의 영상 또는 육성이 수록된 시청각기록물.
- 7) 대통령 가족의 공적 업무활동과 관련한 기록물.
- 8) 기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대통령관련 기록물로 지정한 기록물.

2.2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인정한다면, 이제 향후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어야 할 '대통령기록관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수집기능

대통령기록관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국가통치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대통령이 국가통치와 관련하여 실시한 결과물 등 제반 기록물의 생산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이것들의 역사적 가치와 정보 가치를 평가해서 수집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전제로 한다.

예컨대, 미국의 경우 각 대통령기록관이 수집하고 있는 기록물은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공식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자료와 시청각자료, 사진자료는 물론이고 공직 수행 중 받은 선물이나 사용하던 가구와 집기, 의상 등 박물자료, 개인문서, 대통령과 관련된 개인들이 기증한 역사적 자료, 구술사 녹음자료, 대통령 임기 전후의 기록 등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다. 또 최근에는 전자자료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수집기능의 결과, 2001년 3월 현재 미국 10개의 대통령기록관과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 그리고 2003년 완공예정으로 정리작업이 시작된 Clinton Presidential Materials Project로 구성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시스템에 소장된 기록물이 문서자료 4억 페이지, 사진 1000만 장, 영화필름 1500만 페트, 10만 시간 분량의 시청각자료, 박물자료 50만 건에 이른다 (NARA 홈페이지 참조).

대통령기록관의 수집기능은 기록물의 생산 보장과 폐기절차의 공정성 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대통령기록물을 포함한 공공기록물의 생산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준수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국의 Presidential Library Act 제2204조 a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일기 종료 전에 자신의 기록물 가운데 정보공개가 제한되어야 할 기록물에 대해 최대 12년까지 공개제한을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민감한 문제를 다룬 기록물이 생산되고 대통령기록관에 수집되는 것을 보장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이 법에는 대통령의 기록물 폐기권

및 국립기록관리청장의 폐기승인권이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은 임기 중 생산된 기록물 중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국립기록관리청(NARA)장의 서면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지만, 청장은 의회와의 이해관계나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할 경우 의회와 협의하여 그 폐기의사에 대하여 이의(異意)를 제기할 수 있고, 이럴 경우 대통령은 해당 기록물을 폐기 할 수 없다.

2) 보존기능

기록물은, 그 재료와 형태에 따라 수명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절한 보존과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되고 심지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기록물을 후대에 전달해서 역사의 맥(脈)을 이어가는 것이 기록관의 기본적 사명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대통령기록관에서 기록물의 보존과 훼손된 기록물의 복원기능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다. 실제로 세계 각국의 대통령기록관들은 기록관의 입지선정과 설계에서부터 사공에 이르는 보존서고 건축의 완전성, 자료의 종류와 형태별로 다양한 최적의 환경조건의 유지와 비품 사용, 화재나 수해 등 재난에 대한 대책 마련, 일단 손상된 자료의 복원 대책, 그리고 보존 및 복원 전문가의 확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3) 정보제공기능

기록관을 포함해서 모든 기록정보관리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각종 기록정보관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정보 자료를 분류하고 목록을 편찬하고 색인을 하는 것, 그리고 정보전문가를 배치해서 각종 참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관리기관들의 노력의 구현이라고 볼 수 있다.

기록관리에 있어서 현용기록(records)과 기록사료(archives)의 생명주기에 따른 일관된 기록물 정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카터(Carter)대통령은 좋은 선례를 남겼다. 즉, 취임 초기부터 자신의 대통령기록관 건립에 관심을 보였던 그는, 국립기록관리청에서 백악관으로 아카비스트를 파견하여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정리에 대해 백악관 직원을 교육시키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기 전에 기록물을 정비하는 준비를 진행시키도록 한 것이다(이상민 2001, 10).

정보기술의 발달은 대통령기록관의 정보제공 기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각국의 대통령기록관들은 컴퓨터를 활용한 기록물의 정리시스템과 검색시스템을 개발해서 정보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물을 디지털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4) 연구기능

대통령기록관은 역사학자는 물론이고 정치학·국제관계학·행정학·문학 등등 모든 학문 영역의 연구자들에게 매력적인 연구자료의 보고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에 부여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소장 기록물을 활용한 연구를 장려하여 학술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기록관 중 상당수가 대학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부시대통령기록관(George Bush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의 경우, 그 기록관이 위치하고 있는 Texas A&M University가 운영하는 세 기관 즉 George Bush School of Government and Public Service, Center for Presidential Studies, Center for Public Leadership Studies와 연계하여 행정학 또는 대통령학 관련 연구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Texas A&M University가 부시(Bush)대통령기록관을 유치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음은, 부시대통령이 대학평의원회 의장 Ross D. Margraves, Jr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혀져 있다.

“본인은 귀 대학이 도서관을 학술활동과 통합시키겠다는 약속을 했음을 알고 특히 기뻤습니다. [부시대통령기록관과 연계해서 행정학대학원과 대통령학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은] 도서관과 귀 대학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것이며, 다른 고등교육기관들(텍사스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의) 학술적 참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¹²⁾

실제로 그는 자신의 기록관이 단순히 기념비적 건물이 아니라 학술연구의 요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한 바 있다(Alsobrook 1995).

대통령기록관의 연구기능은 연구비지원사업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즉, Roosevelt Library, Kennedy Library, Johnson Library, Ford Library 등 미국의 많은 대통령기록관에

12) President George Bush to Ross D. Margraves, Jr., May 3, 1991, letter quoted in “Preparation Begins for Bush Library,” Texas A&M—Texas Official Game Program (November 28, 1992).

서는 각각 사립재단과 연계해서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비지급의 조건이나 액수는 일정하지 않지만 대체로 해당 기록관의 자료를 활용해서 수행하는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적으로 지원신청서를 받아서 선정하여 지급한다.

5) 박물관기능

텍스트 자료에만 의존해서 어느 특정 대통령의 한 시대를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각종 실물과 표본·모형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은 그런 한계를 극복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특히 전문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대통령기록관의 박물관기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그들은 전시물을 직접 관찰하고, 만지며 조사하고, 작동해 봄으로써 훨씬 직접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고 흥미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대통령기록관들은 공식명칭에 박물관이란 용어를 짊어넣고, 기록관기능과 박물관기능을 대등하게 놓고 있다. 그리고 기록관은 연구자를 위해서, 박물관은 일반인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6) 교육기능

대통령기록관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전시회와 컨퍼런스·강좌 등을 개최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통령기록관들은 어린이·청소년·교사·일반인 등 대상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Johnson Library가 운영하는 LBJ Summer Worksop for Teachers는 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기록관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습활동에 기록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교수계획서를 작성하고 공유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¹³⁾ 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은 유치원생부터 중학생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역사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와 활동 프로그램인 Gram's Trunk를 운영하고 있다.¹⁴⁾ 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Hoover대통령 및 가족의 전기, 교사용 지침서, 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를 제공한다.¹⁵⁾

13) http://www.lbjlib.utexas.edu/johnson/museum.hon/education/wkshop_home.asp에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4) <http://hoover.nara.gov/education/gramstrunk.html>에서 상세한 정보를 볼 수 있다.

15) <http://hoover.nara.gov/education/index.html>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7) 관광기능

대통령기록관이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관광지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관광객들은 대통령기록관 방문을 통하여 해당 국가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방문객을 위해 안내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념품 판매를 통하여 관광객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계속 역사에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2.3 대통령기록관의 형태 및 면적

위와 같은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완수(完遂)하기 위해서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때에는 그 형태적 요소 및 면적(공간)의 문제를 중시(重視)하여야 한다.

첫째, 대통령기록관의 형태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관에 수집되고 보존·전시되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나 측근 참모 도는 대통령에게 자문하거나 조력하는 행정부서가 헌법 및 법률 상 대통령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수취하는 모든 문서자료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해당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물도 함께 수집되어, 이들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된다면, 그 대통령기록관은 아주 훌륭한 대국민 교육·문화·홍보의 장(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위와 같은 관점을 중요시하여,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並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우리나라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력 등의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 후의 문제 및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해 보면, 이격변하는 시기의 대통령기록물은 그 총량(總量)이 현재의 대통령기록물 보다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신축되는 대통령기록관은 그 시설과 면적의 문제는, 통일을 전후하는 시기의 대통령기록물의 총량을 고려하여,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 대통령기록관의 기능 등을 고찰하여 보았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登載)된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이나 그 등제가 최근에 확정된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 세

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고 완벽한 통치기록(統治記錄)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와 연결되는 현대사와 관련한 역대 대통령기록관의 설립(設立)은 대단히 시급하고도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전 장에서는 대통령기록관 설립의 당위성 및 그 기능 등을 고찰하여 보았다. 본 장에서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國家 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서의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에 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位相)은 반드시 세고(提高)되어야 한다.

현행 「기록물관법」 제5조에 의하면, 중앙기록물관리기관(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서 “기록물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둔다”라는 조문에 입각하여 정부기록보존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기록보존소가 「기록물관법」 제5조 2항에 제시된 8개 사항의 업무 및 입법부·사법부·행정부의 국가기록물 및 군(軍)·국정원·검찰·경찰 등의 특수기관의 기록물을 등 모든 국가기록물을 총괄(總括)·조정(調整)·관리(管理)하고, 또 새롭게 신설(新設)될 대통령기록관의 기능까지 포함(包括)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은 반드시 제고(提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행정자지부장관 소속 하에 ‘2급 국장’이 그 기관장을 수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체계적으로 보아도 위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한계(限界)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선진국 기록관리기관의 위상은 우리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은 기관장의 위상은 장관급이며, NARA 또한 독립기관으로 존속되고 있다. 영국과 중국 또한 그 기관장의 위상이 차관급임을 주시(注視)하여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프랑스와 일본의 경우 국장급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은, 미국·영국·중국의 사례와 같이, 그 기관장이 최소한 차관급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표 1> 국가별 국가기록관 기관명 및 기관장의 위상, 소속부처

국가명	기관명	기관장 위상	기관소속
미국	NARA	장관급	독립기관
영국	Public Record Office	차관급	대법원
프랑스	Archives Nationales	국장급	문화부
중국	國家檔案局	차관급	국무원
일본	國立公文書館	국장급	총리부
한국	정부기록보존소	국장급	행정자치부

동시에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예컨대 <국립기록관리청>과 같이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으로 승격될 때, 비로소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國家 中央記錄物管理機關)으로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의 모든 국가기록물을 총괄(總括)·조정(調整)·관리(管理)하고, 대통령기록관 기능까지 포함(包括)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반드시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인 청(廳) 단위의 독립기관 즉 <국립기록관리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제고(提高)되어야 한다.

둘째,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승격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및 각급 국가기관의 기록물을 관리를 자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치에서 존속되어야 하는 훌륭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archives)의 존재는 빼어난 기록물관리(records management)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격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반드시 독립기관으로 존속되어야 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함께 들어설 때, 역대 대통령기록물들은 집중적인 수집·관리·보존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부가 현재 보존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수량이 극히 빈약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한 곳에 모아서 그 보존서고(保存書庫)를 건축하여 보존하면서, 전시관도 또한 마련하여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록물관리법」에 의하여, 현재의 대통령부터는 임기 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이 대량으로 수집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신축되는 대통령기록관 보존서고 및 전시관의 규모를 장기적 안목에서 확장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기

념관도 현재 정부기록보존소가 구상하고 있는 신축 보존서고의 부지 내에 함께 입주하여야 하며, 이 역시 향후 증축을 고려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4. 신축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입지조건 및 환경·주변조건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보존서고)은 그 입지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신축 건물에 대통령기념관도 새로 설립되어 함께 입주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같이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입지 위치(位置)조건 및 환경조건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4.1 신축 보존서고의 입지조건

신축되어야 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대통령기록관이 함께 입주(入住)하여야 하고, 또한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국립기록관리청으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한국의 대표적인 중앙기록물관리센터로서의 면모(面貌)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입지의 선정 및 조건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국립기록관리청 및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록물(정보)들의 수집·보존기능에서부터 교육·관광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대표적인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축되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보존서고)는 반드시 수도 서울 시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001년 6월말에 방한(訪韓)한 ICA(Internal Council on Archives) 사무총장 알바다(Albada)씨는 대전에 위치한 정부기록보존소를 방문한 소감에서,

“나는 세계 대다수의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을 방문하여 보았지만,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도(首都)가 아닌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를 처음으로 경험하였고, 그것도 독립청사가 아닌 종합청사의 일부 층에 국가기록물관리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희귀한 사례를 본다. 이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이다.”¹⁶⁾

라고 밀한 바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가기록물관리를 대표하는 얼굴과도 같은 정부기록보존소가 수도(首都) 서울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날카롭게 지적(指摘)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기록보존소가 독립된 건물을 유지(維持)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제5의 도시인 대전의 정부청사 중 한 동의 일부 층에 흩어져 있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회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注目)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영국·프랑스·중국·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세계적으로 기록물관리분야의 선진국들의 국가대표 기록물관리기관은 그 국가의 수도(首都)의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確認)할 수 있다.

〈표 2〉 국가별 국가기록관 기관명, 기관의 입지 위치, 독립건물 여부

국가명	기관명	기관의 입지 위치	독립건축물 여부
미국	NARA	수도 워싱턴 시내	독립건축물, 응장함
영국	Public Record Office	수도 런던 시내	독립건축물, 응대함
프랑스	Archives Nationales	수도 파리 시내	독립건축물, 부지 넓음
중국	國家檔案局	수도 북경 시내	독립건축물, 부지 넓음
일본	國立公文書館	수도 동경 시내	독립건축물, 궁성의 일부 주변 궁성부지가 넓음
캐나다	National Archives	수도 벤쿠버 시내	독립건축물, 응장함
이탈리아	Archivio Storico Capitolino, Rome	수도 로마 시내	독립건축물, 응장함
한국	정부기록보존소	한국 제5의 도시(대전)	대전청사 건물 일부층

〈표 2〉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국가기록관리청들은 공히 해당국가의 수도(首都) 시내(市內)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응장한 독립건축물로 조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집무실(청와대) 및 행정부(정부종합청사)·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 등 국가기록물을 생산하는 핵심기관이 모두 수도 서울 시내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한 바와 같이, 이들 기관이 생산한 국가기록물들을 수집하고 관리·보존하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시 수도 서울 시내에 응장한 독립건축물로 위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바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도인 서울 시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당위성이라 할 것이다.¹⁷⁾

16) 이는 알바다(Albada) ICA사무총장이 대전 소재(所在) 정부기록보존소를 방문하였을 때, 이 기관의 간부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지적된 사항임을 여기에 밝혀 둔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이 입주하는 정부기록보존소 신축 보존서고의 위치는 반드시 서울시내(市內)에 입지(立地)하도록 조치(措置; 措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신축 보존서고는 대통령기록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얼굴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건물의 조성은 웅장하고도 독립된 건축물로 신축되어야 함을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主張)하는 바이다.

4.2 신축 보존서고의 환경을 고려한 주변조건 및 입지의 선정

대통령기록관이 입주하는 정부기록보존소 신축 보존서고는 '대통령기록관의 기능'과 '국가기록물 관리보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인, 대통령통치기록물의 수집·보존·정보제공·연구·박물관·문화·교육 기능 등을 공히 충족시켜야 한다. 동시에 국가기록물 관리보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족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기능들의 충족을 위해서는 신축 보존서고의 입지 및 환경을 고려한 주변 조건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인과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을 중시(重視)한다면, 신축되는 정부기록보존소의 보존서고는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그리고 인근 입법부인 '국회'와의 연계선상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입지(立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대통령기록관과 정부기록보존소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그 중에서도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중시하고 사법부와의 위치 등을 고려한 연계선상에서 그 위치를 선정한다면, 서울시 강남(江南) 서초동의 국립중앙도서관·예술의 전당(오페라하우스, 국립국악원, 국립서예원 등)·및 법원 등과의 연계선 상에서 위치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셋째, 대통령기념관의 전시기능 및 박물관·교육기능 등을 중시한다면, 용산의 전쟁기념관, 현재 공사중인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염두에 두고, 이 기관들과 하나의 단지로 묶을 수 있는 용산의 현재 미군부대 자리에 위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하나의 탁견(度見)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부지는 현재 정부가 서울 시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넓은 부지와 조경환경

17) 만약 국립기록관리청이 수도 서울 시내에 입지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서울시와 교통이 원활한 서울시 경계선과 바로 인접한 외곽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위 본문의 관점에 따라서, 국립기록관리청은 수도 서울 시내에 소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대비한 대통령기념관 및 국립기록관리청의 부지로서 최적(最適)의 환경과 조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위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대통령기록관의 연구기능에 눈을 돌린다면, 서초구 세종연구소의 부지 내 일부 등이 그 적합한 장소로 입지(立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기능을 충시할 수 있는 위 둘째의 방안과 연계할 수 있는 서초구 내에 입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 장점일 것이다.

다섯째, 서울 시내 관청의 과밀화로 인한 공간의 부족 문제를 고려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신축보존서고 부지를 선정한다면, 판교 신도시의 일부 부지 등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위치할 장소로서 그 자격이 다소 미비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아도, 국가대표기록관리기관은 해당 국가의 수도(首都)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국가대표 기록관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기록보존소는, 신축되는 보존관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국가적인 협력체계를 총동원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5. 결 론

이상의 본론에서 대통령기록관의 설립 및 정부기록보존소의 위상 등을 고찰한 바의 핵심(核心)을 다시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이관되는 기록물의 수량이 해마다 급증하여 지금의 보존서고로는 3년 이내에 한계상황에 도달한다. 미국의 경우, 1935년에 완공된 National Archives의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1993년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일명 Archives II)라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신축 보존서고의 설계와 건축은 한 시(時)가 시급(時急)한 상황에 있다.

둘째, 대통령기록물은 역사(현대사)의 올바른 기록과 해석을 위해서 가장 귀중한 공적(公的) 재산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重要)한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이라 할 수 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신축 때에는, 역대 대통령관련 기록물의 수집조차 되고 있지 못하는 작금

(昨今)의 상황에서,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존·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정부기록보존소가 2001년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신규 기록물보존서고 확보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런 현실인식에 기초한 것으로(정부기록보존소 1999), 신축 서고의 설립 때에는 필수적으로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건축하여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하고 그 당위성이 마땅하다. 대통령기록관은 현행 기록물관리법 제8조와 13조에 입각해서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현재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통령기록관의 기능은 대통령기록물의 수집·보존·정보제공·연구·박물관·교육·관광 기능까지 실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해당 대통령의 통치기간 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기록물 및 그 시기에 발생한 국가적이면서도 역사적인 기록들도 함께 수집되어, 이를 기록물들이 전시관(展示館)이라는 공간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시(展示)된다면, 그 대통령기록관은 아주 훌륭한 대국민 교육·문화·홍보의 장(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대 대통령기록관의 설립(設立)은 대단히 시급하고도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기록관을 신축할 때에는, 위와 같은 관점을 중시(重視)하여,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전시관(展示館)과 보존서고(保存書庫)를 반드시 병존(並存)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우리나라 남·북한 사이의 대화와 협력 등의 문제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남북한의 화해와 통일 후의 문제 및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고려해 보면, 이 격변하는 시기의 대통령기록물은 그 총량(總量)이 현재의 대통령기록물 보다 몇 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신축되는 대통령기록관은 그 시설과 면적의 문제는, 통일을 전후하는 시기의 대통령기록물의 총량을 고려하여, 현재 예측되는 공간 면적보다 최소한 2-3배 정도로 충분히 확보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국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은 미국의 경우 장관급이며, 영국과 중국의 경우 차관급이 그 기관장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정부기록보존소는 그 신축 보존서고에 대통령기록관이 동시에 입주하여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입법부·사법부·행정부 등에서 생산하는 국가기록물을 올바르게 통제(統制)·조정(調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以上)의 기관장이 관장하는 청(廳) 단위 이상의 독립기관 즉 <국립 기록관리청>으로 그 위상이 반드시 제고(提高)되어야 한다.

여섯째, 신축되는 보존서고는 반드시 수도 서울 시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미국·영국·프랑스·중국·일본·캐나다·이탈리아 등 세계적으로 기록물관리분야의 선진국들의 국가 대표 기록물관리기관은 하나같이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首都) 핵심부에 위치하고 있음과 동시에 웅장한 독립 건축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確認)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집무실(청와대) 및 행정부(정부종합청사)·입법부(국회)·사법부(대법원) 등 국가기록물을 생산하는 핵심기관이 수도 서울 시내에 위치하는 것이 당연한 바와 같이, 이들 기관이 생산한 국가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보존하는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역시 수도 서울 시내에 웅장한 독립건축물로 위치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은 바로 국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수도 서울 시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당위성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이 입주하는 정부기록보존소 신축 보존서고는 반드시 수도 서울 시내(市內)에 위치하도록 조치(措置; 措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웅장하고도 독립된 건축물로 신축되어야 함을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主張)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곽건홍. 2000. “대통령기록물 관리 방향과 아카이스트의 역할”. 「기록문화, 기록과, 아카이스트: 기록학 심포지엄」 마산: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pp.61-71.
- 국립중앙도서관 편. 1997. 「도서관자료의 과학적 보존관리를 위한 연구」. 서울: 한국기록보존협회.
- _____. 2000. 「자료보존관리과정」.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박찬승. 2000. “역대대통령기록관 구상과 국가기록관리”. 「국가기록관리의 발전 방향: 국가기록관리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pp.45-57.
- 이상민. 2001.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및 열람공개”. 「한국기록관리학회 제3회 학술발표논문집」 pp.1-18.
- _____. 1999. “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제도의 성립과 발전”. 「미국사연구」 10집. pp.143-180.
- 정부기록보존소. 1999. “정부기록보존소 소개”. <<http://www.archives.go.kr>>
- 최정태 등. 2001. 기록학개론. 서울: 아세아문화사.
- Association for Library Collections and Technical Services. 1991. Guide to Review of Library Collections: Preservation, Storage and Withdrawal.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Baynes-Cope, A. D. 1996. "Creating Buildings for Rare Books and Archival Documents". Restaurator, 17(1) pp.22-24.
- Condon, Janette and Elizabeth Brown. 2000. "A Repository of Change: the Re-development of the Australian War Memorial's Research Centre". Australian Library Journal, 49(1) pp.45-50.
- DePew, John N. 1991. A Library, Media and Archival Preservation Handbook. Santa Barbara, Calif.: ABC-CLIO.
- Draaba, Peter and Juraj Spiritza. 1990. "The Solution of the Space Requirements of State Archives in Slovakia". The American Archivist, 53 (Summer) pp.484-487.
- Drewes, Jeanne M. and Julie A Page, ed. 1997. Promoting Preservation Awareness: a

- Sourcebook for Academic, Public, School and Special Collections.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 Feather, John. 1996. Preservation and the Management of Library Collections. London: Library Association.
- Harvey, Ross. 1993. Preservation in Libraries: Principles, Strategies and Practice.
⇒ 우리말 역본: 권기원 · 방준필 · 이종권 옮김. 1999. 자료보존론. - 서울: 사민서각.
1993. Preservation in Libraries: a Reader. London: Bowker-Saur.
- Helal, Ahmed H. and Joachim W. Weiss, ed. 1996. Electronic Documents and Information: from Preservation to Access. Essen: Universitaetsbibliothek Essen.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1996. "Code of Ethics"(http://www.ica.org/c_ethics_e.htm)
- Lor, Peter John. 1996. "Guidelines for Legislation for National Library Services: Provisional Version". Paris: Unesco.
<http://www.ifla.org/VII/s1/gnl/index.htm>
- MacLochlainn, Grainne. 2000. "Moving Pictures: the National Photographic Archive". Art Libraries Journal, 25(3) pp.33-36.
- McDonald, Larry. 1990. "Forgotten Forebears: Concerns with Preservation, 1876 to World War I". Libraries and Culture 25(4) pp.483-495.
-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97. Archives II,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Using Technology to Safeguard Archival Records. NARA Technical Information Paper Number 13.
<http://www.nara.gov/arch/pdffiles/tip13.pdf>
- Neirinck, Danielle. 1990. "The role of the Technical Service of the Direction des Archives in the Construction of Archival Buildings in France". The American Archivist, 53(Winter) pp.140-146.
- Ogdon, Sherelyn, ed. 1994. Preservation of Library and Archival Materials: a Manual. Andover, Mass.: Northeast Document Conservation Center.

- Pacifico, Michele F. 1996. "The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13(2). pp.115-131.
- Ratchiff, F.W. with the assistance of D. Patterson. 1984. *Preservation Policies and Conservation in British Libraries: Report of the Cambridge University Library Conservation Project*.
- Ritzenthaler, Mary Lynn. 1989. "Preservation of Archival Records: Holdings Maintenance at the national Archives".
<http://www.nara.gov/arch/pdffiles/hm/hm.pdf>
- Sawyer, Kathy. 2001. "Burst Pipe Inundates NASA Photo Archives: Restorers Seeking to Rescue Images" *Washington Post*. May 10. p.A29.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6882-2001May9.html>
- Swartzburg, Susan G. 1995. *Preserving Library Materials: a Manual*.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_____, and Holly Bussey. 1991. *Libraries and Archives: Design and Renovation with a Preservation Perspective*. Metuchen, NJ: Scarecrow Press.
- Utah State Archives & Records Services. 2000. "Records Preservation, Care, and Handling". <http://www.archives.state.ut.us/preserv/prescare.htm>
- Wagner, Sarah S. 1991. "Cold Storage Handling Guidelines for Photographs".
<http://www.nara.gov/arch/techinfo/preserva/maintena/cold.html>
- Whiffin, Jean I. and John Havermas, ed. 1998. *Library Preservation and Conversion in the '90s*. Munchen: K.G. Saur.
- Williams, Gordon. 1966. "The Preservation of Deteriorating Books". *Library Journal*, (1 January) pp.51-56; (15 January) pp.189-194.
- Wilson, Alexander. 1988. *Library Policy for 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in the European Community: Principles, Practices and the Contribution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Munchen: K.G. Saur.